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보도자료		담당	대외협력담당관
				담당관 이은용
	배포일시	2026. 9. 8.(화)	연락처	02-3393-9742
	보도일시	즉시 보도		

(04554)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남산스퀘어빌딩) 19~20층 (신청 문의, 02-3393-9700)

언론·홍보팀장 이지원 (02-3393-9754), 홍보전문위원 박영일 (02-3393-9753)

3기 진실화해위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

- 3기 위원회 첫 직권조사… 한국통신 노조·한선사 노조 탄압사건도 조사
-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각각 20곳 전남 18·전북 10곳 민간인 희생 조사

-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인정돼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됐다. ‘한국통신(KT) 노조탄압사건’을 포함한 118개 사건 1,041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8월 11일에 이은 세 번째 조사개시다.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3기 위원회 직권조사 1호 결정 사건이 됐다. 이밖에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655건과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2001. 11. 24)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181건과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205건도 조사개시됐다.

[3기 위원회 첫 직권조사…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 진실화해위원회는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했다.
-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직권조사로 결정한 이유는 1·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남북귀환어부들을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하고 간첩으로 조작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준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 진실규명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기존의 조사 결과에서는 남북귀환어부들이 귀환 직후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일괄적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 등 인권침해가 확인됐다.
-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잘못 집행된 법질서를 바로 잡아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됐다.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 역사성 등을 감안해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2기 위원회의 첫 번째 직권 조사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판결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故 박○○)’에 대해서도 의결을 거쳐 조사개시 결정했다.
- 또한 안기부 등 국가기관이 한국통신공사와 공모하여 1988년부터 한국통신 조합원을 사찰하고 노조 선거에 부당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과 1987년 3월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 등 공권력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진○○)’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형제복지원·철성원,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개시]

- 진실화해위원회는 해방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발생한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2)’는 국가의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후,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2기 위원회 조사 결과, 조사기록과 신청인 제출기록에서 대상자들의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추가 진술 청취와 기록 입수, 분석을 통해 개별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개시했다.
- 특히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부산시 동래구 장전2동 소재 칠성원에 강제로 수용돼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1)’과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청소년 집단수용시설인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1)’에 대해서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1)·(2)’은 과거 정부의 해외 입양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입양알선기관이 아동의 보호·신원 확인, 입양 절차, 해외이주 허가 등을 진행하며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2기 위원회 활동 종료로 중지되었던 해외 입양 사건 311건에 대해 조사를 지난 7월 21일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신청 사건은 2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들과 피해구조 및 쟁점이 동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개별 신청인의 피해 사실과 국가의 관여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인정돼 조사개시 결정했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 조사개시]

□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도 조사개시 결정했다.

□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전후 경남과 대구·경북, 충남·충북, 전남·전북,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대부분 군·경이 인민군 등 좌익 협조자, 부역혐의자 색출과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들이다.

- 특히 경남 진주, 경북 울진·영덕, 대구, 충남 서산·태안, 공주·아산, 서울, 인천 강화, 경기 가평·김포·양평·여주, 전남 장성·고흥·광양, 충북 영동·옥천·괴산·충주., 충남 서산·홍성·예산·홍성 등 11개 이상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포함됐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발생시기와 지역, 가해주체, 희생사유와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빨치산 협조자와 좌익활동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연행해 총살하거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개시 결정했다.

□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은 전북 익산, 전남 신안·영광·화순, 충북 영동·충주·단양, 충남 태안·공주·아산·대전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조사개시 결정됐다.

- 이는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지역 주민들이 우익인사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 마을 유지 및 공무원이나 국군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빨치산, 지방좌익 등의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되거나 실종된 사건들이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들 사건의 발생시기, 지역, 가해주체, 희생사유와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적대세력에 의해 지역주민이 희생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3기 진실화해위원회 첫 직권 조사 결정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구조적인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오랜 시간 진실을 기다려 온 피해자와 유족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이다.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및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 인권침해 사건, 집단수용 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한 후 국가에 대해 후속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 진실규명 신청은 2028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청은 사건 피해자나 유족,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도 가능하다. 진실화해위원회와 시청·군청·구청 민원실,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은 이메일(jinsil26@korea.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실화해위원회 대표전화(02-3393-9700, 82-2-3393-9700)나 누리집(홈페이지, www.jins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제3차 조사개시 결정 사건 목록 및 주요 사건 개요 1부

참고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후 처리 절차



[직권조사 1건, 조사개시 안건 118개 사건, 신청 건수 1,041건]

□ [제1소위원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연번	사건명	신청 건수
1	경남 진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3
2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2
3	경북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6
4	경북 군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5	경남 거제·통영·사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7
6	대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8
7	충북 영동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1
8	충북 옥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5
9	충북 청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8
10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0
11	충남 태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8
12	충남 예산·홍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9
13	충남 공주·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1
14	충남 부여·논산·금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
15	대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16	충남 예산·홍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3
17	충남 보령·논산·서천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5
18	강원 영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19	강원 춘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20	서울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21	인천 강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9
22	인천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	1
23	서울(서대문)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	1
24	서울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3
25	경기 가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26	경기 김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27	경기 양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28	경기 여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29	경기 안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6
30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11
31	전남 고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32	전남 광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33	전남 보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34	전북 군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35	전북 익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
36	전북 진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
37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14
38	전북 남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39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5
40	전북 임실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41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5
42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6
43	전북 고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9
44	전북 부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3
45	군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	2
46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	1
47	목포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1)	2
48	전남 신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15
49	전남 신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7
50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51
51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2
52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5
53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2
54	전남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55	전남 강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8
56	전남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57	전남 장흥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10
58	경북 영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6
59	경북 포항·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60	경북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15
61	경북 문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20
62	경북 상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4
63	부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64	경남 산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5
65	경남 하동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1
66	경남 함안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67	경남 함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68	경북 김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5
69	경북 성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70	경북 칠곡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

71	경북 경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8
72	경북 청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1
73	경북 영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2
74	경북 경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
75	경북 안동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5
76	경북 영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
77	경북 의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
78	경북 청송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
79	경남 김해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7
80	경남 창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81	울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10
82	충북 영동·옥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6
83	충북 영동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2
84	충북 괴산·충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85	충북 충주·단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2
86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11
87	충남 태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
88	충남 홍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7
89	충남 예산·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2)	2
90	충남 공주·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10
91	충남 연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3
92	충남 공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
93	충남 아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
94	충남 서천·금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2
95	충남 보령·서천·부여·논산·금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7
96	대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	3
97	대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1
	계	655

□ **[제2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 인권침해 사건**

연번	사건명	신청 건수
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1)	-
2	삼청교육 피해사건(고○○ 등 23건)	23
3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故 전○○)	1
4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	1
5	군 복무 중 진료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실명사건	1

6	경찰 시위 진압에 의한 부상사건(진○○)	1
7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진○○)	1
8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故 박○○)	1
9	1980년 제1기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9
10	여성 재소자 순화 교육 사건	2
11	故 윤○○·윤○○ 부자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2
12	1988년 이후 90년대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11
13	교정시설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2)	11
14	교정시설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3)	107
15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양○○ 등 9건)	9
16	강제징집 및 군 복무 중 인권침해 사건(故 박○○)	1
	계	181

□ **[제3소위원회]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연번	사건명	신청 건수
1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	79
2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1)	11
3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1)	3
4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2)	73
5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1)	12
6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2)	27
	계	205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조사개시 사건 개요

□ 경남 진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50년 7월경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진주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과 진주지역 군경에 예비검속되어 진주경찰서 관할 지서 및 유치장 등에 구금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육군 정보국 진주지구 CIC, 진주지구 헌병대, 진주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 마산 진전면 여양리(여항산) 등지에서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와 지역, 가해주체, 희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경이 진주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자와 진주형무소 재소자를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희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함

□ 경북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경북 울진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한국전쟁 기간 중 국군이 울진을 수복한 1950년 9월 말부터 부역혐의 등으로 울진 경찰서와 관할 지서, 국군 등에 의해 연행되어 죽변지서, 서면지서, 하당지서, 울진경찰서 등에 구금되었다가 울진면 신탄 울시골, 죽변면 후정리 부들골 등에서 희생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경북 울진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인민군 점령기에 공적인 역할을 맡거나 특정 단체에 속했다는 등 부역했다는 명목으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경북 영덕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경북 영덕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1947년부터 1950년

사이에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거나 좌익으로 오인받아 강구면, 남정면, 지품면, 창수면 등지에서 군인 또는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달산면 인곡리, 지품면 옥류리 뒷산, 창수면 미곡리 못둑계곡 등에서 희생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경북 영덕군의 깊은 계곡가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공비토벌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경북 군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군위지역에서 군경에 예비검속되어 군위경찰서 관할 지서 및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군위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우보면 나호동 비호골을 비롯한 군위지역 도처에서 살해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와 지역, 가해주체, 희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경이 경북 군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대상자를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희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함

□ 경남 거제·통영·사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49년 4월부터 5월 말까지 거제지역 주민들이 빨치산 및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군 16연대, 호림부대 등에 의해 동부면 구천리 서당골 등에서 살해된 사건과,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남 거제·통영·사천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대상자들이 거제·통영·사천경찰서 및 관할지서 경찰에 의해 예비검속되어 거제시 장승포 앞 바다, 통영시 광도면 무지기 고개, 사천시 용현면 석계리 야산 등에서 살해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와 지역, 가해주체, 희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경이 경남 거제·통영·사천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희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함

□ 대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대구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과 대구지역 군경에 예비검속되어 대구경찰서 관할 지서 및 유치장 등에 구금 중이던 국민보도연맹원 등이 육군정보국 경북지구 CIC(전 방첩대), 대구경찰서 경찰 등에 의해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가창면 상원리 중석광산,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등에서 살해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와 지역, 가해주체, 희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군경이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대상자와 대구형무소 재소자를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 희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함

□ 충북 영동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50년 7월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상촌읍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 및 군경의 수복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북 영동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연행·총살하거나 수복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희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북 옥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

- (사건 개요) 1950년 7월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청성면 일대에서 국민

보도연맹원 및 1950년 9월 말 옥천 주민이 보은에 갔다가 군인에 의해 희생되거나 상해를 입은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북 옥천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예비검속하여 연행·총살하거나 수복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희생시켰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북 청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50년 6월 말부터 1950년 7월 중순 사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자 등 다수의 민간인이 좌익 혐의를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들을 좌익 관련 혐의 또는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청원군 일대와 보은군 일대에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 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남 서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50년 10월부터 1950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지역 일대에서 인민군 및 좌익에 협조했다는 등의 이유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끌려가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 지역, 가해주체, 희생사유와 충남 서산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인민군 협조자와 좌익활동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연행·총살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충남 태안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1년경까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 남면, 태안읍, 근흥면, 이원면, 소원면 일대에서 국민 보도연맹에 가입하였거나 빨치산 등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남 태안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빨치산 협조자와 좌익활동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연행·총살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남 예산·홍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1년 초까지 충남 예산군 대술면, 신암면, 봉산면, 홍성군 홍동면과 대전형무소 등지에서 국민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이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었다가 희생되거나, 군경의 빨치산 협조자 및 좌익활동 가담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남 예산군·홍성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을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집단학살하거나, 빨치산 협조자, 좌익활동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연행·총살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남 공주·아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시기 충남 공주시 유구면, 아산시 배방면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이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었다가 희생되거나, 군경의 빨치산 협조자 및 좌익활동 가담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남 공주시·아산시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을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집단학살하거나, 빨치산 협조자, 좌익활동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연행·총살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남 부여·논산·금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시기 충남 부여군 홍산면, 논산군 연산면, 금산군 부리면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이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에 의해 소집되었다가 희생되거나, 군경의 빨치산 협조자 및 좌익활동 가담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남 부여군·논산시·금산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군경이 국민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을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집단학살하거나, 빨치산 협조자, 좌익활동 가담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연행·총살하는 등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대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사이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 골령골 등 낭월동 일대에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자, 대전형무소 재소자 등 다수의 민간인이 좌익 혐의를 이유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대전 지역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군경이 국민 보도연맹원·예비검속자들과 대전형무소 재소자들을 좌익 관련 혐의 또는 국민보도연맹 가입을 이유로 대전형무소 등지에 구금하였다가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골령골 등 낭월동 등지에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을 집단학살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남 예산·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발발 후 인민군 점령 시기 충남 예산군 대술면, 홍성군 구항면 등지에서 우익인사나 지역유지, 공무원 등 주민들이 좌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무서원, 인민군, 지방좌익 등 적대 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남 예산군·홍성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우익 인사와 지역유지, 공무원 등 주민이 좌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대세력에게 학살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 **충남 보령·논산·서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1)**

- **(사건 개요)** 한국전쟁 시기 충남 보령군 천북면, 논산군 양촌면, 서천군 시초면 일대에서 주민들이 우익인사나 지역유지, 공무원 등 주민들이 좌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무서원, 인민군, 지방좌익 등 적대 세력에게 희생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사건의 발생시기·지역·가해주체·희생사유와 충남 보령시·논산시·서천군의 지리적 배경 및 한국전쟁 전후 상황을 고려하면 우익인사와 지역유지, 공무원 등 주민이 좌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대세력에게 학살되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조사 개시함

2.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전까지 **인권침해 (직권)조사개시 사건** 개요

□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직권조사(1)

< 사건 개요 >

- 남북귀환어부란 동해상과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의 경비정에 의해 납치당하거나 조업을 마치고 출항 지역으로 귀항하는 도중 안개 등으로 인해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수일에서부터 수년까지 머문 후 귀환한 어부를 말함
- 북한이 남한의 어선을 적극적으로 나포하기 시작하자 남한 정부는 동해상에서 어로저지선을 남쪽으로 변경 조정하거나, 월선한 선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함
- 남북귀환어부들은 대부분 북한에 납북되어있는 동안 평양여관 등에 수용되어 가족관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단체로 관광하거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이를 남한 사람들에게 홍보하라는 취지로 교육을 받은 후 귀환함
- 귀환한 어부들은 도착 즉시 합동심문을 받은 후 선적지 및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벌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음
- 귀환 어부들은 귀환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다시 처벌받기도 함

< 직권조사 의결 이유 >

-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3기 위원회의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함

- 한편 종전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대성 및 역사성 등을 감안하여 남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을 2기 위원회의 첫 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하고 진실규명 결정한 바 있음
- ※ 2기 위원회 직권조사 사건(직권조사 결정일 순) : 남북어부 인권침해 사건, 신안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안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학살사건, 3·15의거 사건,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 사건, 재일학도의 용군 한국전쟁 참전 사건, 시국사건 관련자 교사임용제외 사건 등 8건
- 이번 직권조사의 범위는, ① 3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한 어선과 같은 일자에 귀환했으나 진실규명 신청하지 않은 어선 14척과, ②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어선과 같은 일자에 귀환했으나 2기 위원회의 법정 조사기간 만료로 인해 미처 진실규명 조사를 하지 못한 어선 43척으로, 총 57척 366명이 조사 대상임
- 종전 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남북귀환어부에 대한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 적용은 장기간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남북귀환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겨주었음
- 따라서 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과거사정리법 제1조에 정한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함
- 또한 남북귀환어부들은 귀환 직후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일괄적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 등 인권침해가 있었음
- 이러한 점에서 남북귀환어부 사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등 피해의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잘못 집행된 법질서를 바로 잡아 이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진실규명의 필요성도 인정됨

- 향후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전체 피해자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계획임

□ **삼청교육 피해사건(고○○ 등 23건)**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80년 7월 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호' 및 1980년 8월 4일 계엄사령부의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1980년 8월부터 군인과 경찰이 약 6만 명의 대상자를 불법 검거하고, 이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수용하여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를 동반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으로 2018년도 대법원에서도 그 위법성을 확인한 바 있음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이번에 조사개시 결정된 이종복 등 23명은 삼청교육 피해자 또는 유가족으로 신군부 집권기 국가권력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됨으로 조사개시함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故 전○○)**

- (사건 개요) 진실규명 대상자는 창명2호 선원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 1968년 7월 2일 납북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1일 귀환한 후, 반공법 수산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음. 귀환 후 불법구금되어 간첩혐의를 강요받은 것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함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창명2호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루어졌고, 결정문 진실규명 대상자 명단에서 전○○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개시를 결정함

※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0)-만복호 등 1968. 10 31. ~11. 1. 동해 귀환 (2025. 3. 25. 결정)

□ 한국통신(KT) 노조탄압 사건

- (사건 개요) 안기부 등 국가기관이 한국통신공사(현, 주식회사 KT)와 공모하여 1988년부터 조합원 사찰, 노조선거 개입, 노조간부 부당전보 등 민주노조 파괴공작을 벌이며, 진실규명 대상자와 한국통신노동조합에 대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신청인 진술 및 신청인 제출자료, 당시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1995년 한국통신사태 당시에 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이 민주노조운동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여 노조활동을 탄압한 사실이 있음

또한 안기부 등의 국가기관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조합원 사찰 및 선거 방해 등 노조활동에 위법하게 개입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1996년 4월 공사 측의 부당노동행위,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조직개편,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의 과정에서 진실규명 대상자인 신청인과 신청인이 속한 노조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개시 결정함

□ 군 복무 중 진료받을 권리 침해로 인한 실명 사건

- (사건 개요) 진실규명 대상자는 군 복무 중 심한 두통, 빈뇨 등 고통을 호소하였고 외출 시 외부 병원에서 안전수동 진단을 받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부대 내 의무대에서 진통제, 안약만 지급하고 14개월간 휴가를 통제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전역 후 뇌하수체 선종으로 인한 실명 및 내분비장애 진단을 받은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신청서의 내용 및 신청인 제출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가 군 복무 중에 발병하였고 이로 인한 고통이 군 복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여서 간부 및 선임병에게

호소하였음에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실명에 이르는 등 충분히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받아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군 복무 중 의무기록과 군의관 등 개별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개시 결정함

□ 경찰 시위 진압에 의한 부상사건(진○○)

- (사건 개요) 진실규명 대상자는 1990년 4월 29일 ‘현대중공업 폭력탄압규탄 및 세계노동절 쟁취를 위한 수도권 노동자 결의 대회’에서 폭력적으로 시위자를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던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피하려다가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크게 다쳤고 뇌수술을 하였지만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등 경찰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이 사건은 경찰이 최루탄 등을 사용하여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가 뇌부상을 입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언론보도와 의무기록지에 부상이 명확하게 확인된바,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 결정함

□ 한선사 노동조합 탄압사건(진○○)

- (사건 개요) 진실규명 대상자는 1987년 3월 21일 한선사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 등 공권력에 의한 노동조합 결성방해, 노조간부 불법연행, 조합원 협박과 사표 강요 등 인권침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이 사건은 안양경찰서와 안양시청이 한선사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을 방해하여, 노조간부 불법연행, 조합원 협박과 사표 강요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한선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진술이

확인된바,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 결정함

□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故 박○○)

- (사건 개요) 진실규명대상자 고(故) 박○○는 1972년 검거간첩 임○○의 진술에 의해 검거되어, 임○○과 회합하고 간첩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징역3년6월, 자격정지 3년6월의 형을 선고받음. 신청인은 대상자가 고모부인 임○○과 접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며 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함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2기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사건 조사 결과, 당시 언론보도 등을 검토한 결과, 진실규명 대상자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는바, 이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 규정한 우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2항 해당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재심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인정됨

□ 1980년 제1기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 (사건 개요) 1980년 9월 법무부 교정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 내 미결수 및 기결수 등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6시간씩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하게 육체적 훈련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순화교육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음
- (조사개시 결정 이유) 1980년 9월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총 4주 동안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제1회 재소자 순화교육이 동시 실시됐고, 이 교육을 시작으로 1987년경까지 약 7년간 지속됐음. 최초의 재소자 순화교육은 순화교육의 목적과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여성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 (사건 개요) 1980년 9월 법무부 교정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 내 미결수 및 기결수 등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6시간씩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하게 육체적 훈련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순화교육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음
- (조사개시 결정 이유) 1980년 9월 이후로 전국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시행된 재소자 순화교육에는 여성 재소자도 포함되었음. 여성 재소자는 남성 재소자 4주와 다르게 통상 2주 동안 실시됐으며, 여성 삼청교육대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됨. 남성 재소자와의 차이점 등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고(故) 윤○○·윤○○ 부자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 (사건 개요) 1980년 9월 법무부 교정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 내 미결수 및 기결수 등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6시간씩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하게 육체적 훈련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순화교육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음
- (조사개시 결정 이유) 1981년 당시 고(故) 윤○○은 당시 51세였으며, 아들인 윤○○은 20세로 같은 사건으로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미결상태에서 동일한 순화교육을 받았음. 연령 등 신체조건과 관련없이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방식과 프로그램의 순화교육이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조사개시 결정함

□ 1988년 이후 90년대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

- (사건 개요) 1980년 9월 법무부 교정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 내 미결수 및 기결수 등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6시간씩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하게 육체적 훈련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순화교육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음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재소자 순화교육이 알려진 것과 달리 1988년 이후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장들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1980년부터 1987년까지 순화교육과 이후의 순화교육의 공통점 및 차이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교정시설 재소자 순화교육 사건(2) · (3)

- (사건 개요) 1980년 9월 법무부 교정 당국은 전국 교정시설 내 미결수 및 기결수 등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출소 이후 재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하루 6시간씩 4주간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동일하게 육체적 훈련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이 순화교육은 1987년까지 계속되었음

신청인들은 당시 교도소 복역 중이거나 미결수로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던 중, 교화를 명분으로 하루 4-7시간 동안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동반하는 군사훈련을 받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받은 사실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당시 「행형법」 등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미결수를 포함한 전체 수용자에게 고강도 군사훈련과 구타·가혹행위를 가하여 신체의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조사개시 결정함

※ 2기 위원회 진실규명 결정(2025. 3. 18. 2라-9849 등 30건)과 동일한 사건임

□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공작 사건(양○○ 등 9건)

- (사건 개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약 30여 년간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특수학적변동자’로 분류하여 강제로 입대시켜 사회와 격리하고, 입대 후에는 동향관찰, 조직적 차별 및 폭행·협박·고문 등을 통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불법 사찰 및 정보수집 활동을 강요당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대학생 강제징집은 제3공화국, 유신체제의 4공화국, 신군부의 제5공화국 등 정권에 항거한 학생 등 민주화 운동 세력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당시 권위주의 정권 주도 하에 불법체포, 감금, 강요행위 등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임

보안사령부는 1982년 5월 17일부터 1984년까지 ‘녹화(침투)공작’,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선도업무’라는 명칭 하에 학생운동 전력을 이유로 강제징집된 대학생들 ‘특수학변자’, ‘선도대상자’, ‘관심대상자’로 분류하여, 군 복무 중에는 동향관찰, 심사·순화(전향)·활용을, 전역 후에는 동향관찰, 활용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학원, 노동, 종교 분야 등에 침투시켜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토록 하였음

1989년 이후에도 청명, 청미, 마파람, 921 등의 명칭으로 1996년까지 유사한 방식의 대상자 발굴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관련 자료가 확인된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조사개시함

□ 강제징집 및 군 복무 중 인권침해 사건(故 박○○)

- (사건 개요) 진실규명 대상자는 1976년 서울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하여,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거부, 학원자유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1979년 9월 25일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 선고가 확정되었고, 이후 같은 해 10월 30일 입대

하여 제33보병사단에서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1981년 7월 29일 한강변에서 익사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진실규명 대상자의 입영이 긴급조치 9호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강제징집이었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징집 이후 녹화 및 선도공작 대상자가 되어 사찰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사개시함

3. 집단수용시설 및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조사개시 사건 목록

□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 · (2)

- (사건 개요) 국가의 부랑인 단속 및 시설 강제수용 정책으로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불특정 민간인을 1960년 7월 2일부터 1992년 8월 20일까지 운영되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고, 수용 과정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록 및 신청인 제출 기록에서 대상자들의 형제복지원 수용 사실이 확인되므로, 추가 진술 청취 및 기록 입수·분석을 통해 개별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 결정함

□ 칠성원 인권침해 사건(1)

- (사건 개요) 신청인 정○○ 등 11명이 1970 ~ 1975년 부산시 동래구 장전2동 소재 칠성원에 강제로 수용되어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임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신청인 정○○ 등 11명이 불법 단속에 의한 강제 수용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입수·분석, 참고인 및 조사대상자 진술조사 등을 통해 피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 결정함

□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1)

- (사건 개요) 국가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 등 공권력을 행사하여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강제 연행한 후,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선감학원에 강제수용하고, 수용 과정에서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이 있었던 시설 사건으로, 당시 조사기록과 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선감학원의 아동 인권침해 사실 및 진실규명대상자들의 선감학원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바, 조사를 통해 신청인들의 개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개시 결정함

□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1) · (2)

- (사건 개요) 과거 정부의 해외 입양 추진 과정에서 국가기관과 입양알선 기관이 아동의 보호·신원 확인, 입양 절차, 해외이주 허가 등을 진행하며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
- (조사개시 결정 이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앞서 제2기 위원회 활동 종료로 중지되었던 해외 입양 사건 311건에 대해 조사를 재개(2026. 7. 21.)한 바 있으며, 이번 신규 신청사건 역시 2기 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해외 입양 사건들과 피해구조 및 쟁점이 동일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개별 신청인의 피해 사실과 국가의 관여 경위 등을 확인하고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사개시를 결정함